

#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법원공용차량의 배정 및 교체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차량 교체 신청시 사고 여부 및 수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함(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)
-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, 수리비의 기준을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(안 제4조제2항제3호)
- 공용차량의 사고위험성 감소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해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)

## 4.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, 차량 수리비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차량의 교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&lt;후 단 신설&gt;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 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</p> <p>4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차량의 교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, 차량 수리비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26